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를 "교육자료 개발 등을 실시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교육평가부"를 "교육자료부"로 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중 "연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교육자료부) 교육자료부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교육기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4. 교육자료실 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